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 102호

#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3(2012.7.26.)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83(2017.07.20.)호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09(2021.06.17.)호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고시합니다.

2022. 5. 6.
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### 1.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사업 (변경없음)

나. 정비구역 결정조서 : 변경

구 분 정비구역	경비크선이 편성	위 치		면 적(m²)			
	정비구역의 명칭	위 시 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고	
변경	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1-3번지 일대	17,560.0	감)10.2	17,549.8	-	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## 다. 정비계획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

7 H		면 적(m²)		7.4111/0/	nl -1
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구성비(%)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	17,560.0	감)10.2	17,549.8	100.0	-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 2)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7. 11	rrl -b]		면 적( m²)		비 율	ען יי
구 분	명 칭	기 정	변 경	변경후	(%)	비고
합	계	17,560.0	감)10.2	17,549.8	100.0	_
획 지	획 지1	14,349.5	증)6.6	14,356.1	81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건 미 키 H).	소 계	3,210.5	감)16.8	3,193.7	18.2	
정비기반 시설 등	도 로	2,223.7	감)11.5	2,212.2	12.6	_
/1/2 <de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del>	소 공 원	986.8	감)5.3	981.5	5.6	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 3)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## 가) 도로(변경없음)

		규	모		_	연장	위	치	사용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 점	종 점	형태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	1	1	10	일반 도로	105	방배동 891-14	방배동 892-23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-
기정	소로	2	1	8	일반 도로	195	방배동 891-14	방배동 894-1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-
기정	중로	3	1	12	일반 도로	95	방배동 891-24	방배동 141-32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-
기정	중로	3	2	12	일반 도로	210	방배동 892-23	방배동 141-40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-

## 나) 공원(변경)

1 1	도면 표시	시설의 종류		위 치		면 적( <i>m</i> ²)		최초결정일	비고
十七	표시 번호	명칭	시설의 세분	귀시	기 정	변 경	변경후	최소설생활	미쓰
변경	-	공원	소공원	방배동 891-21번지 일대	986.8	감)5.3	981.5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_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# 4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: 변경

## 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(변경)

구분	구역	구분	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	
	rd ·bl	마 건 ( )	위치	계	존치	개수	철거후	철거	비고
	명칭	면적( <i>m²</i> )					신축	이주	
기정	방배 제7	17 500 0	방배동	7.0			70		
/1/8	주택재건축	17,560.0	891-3번지 일대	70	_	_	70	_	_
변경	방배 제7	17 540 0	방배동	70	_		70		
변경	주택재건축	17,549.8	891-3번지 일대	70	_	_	70	_	_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 나)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기구 ㄸ느	회기 구브					요저희	루(%)			
711 12		이 권	スタヒ	건폐	율			높이		
명칭		귀 시	一号工	(%	)			/층수(평균)		
	$(m^2)$	ol al=				계획	법석상안			
aa a a			공동주택 및		1.1	221.5%	239.45%	65m이하		
왹지 ]	14,349.5			30%o s				/최고19층(15층이하)		
						' '	' '			
			곳돚주태 및			221 19%	239 45%	65m이하		
획지1	14,356.1			30%	이하			  /최고19층(15층이하)		
						-101	-101	7 1 2 10 8 (10 8 1 1 1 )		
		• 규모별 주택	건설비율							
		전용면적(m²)	) 세대수		1	비율(%)		비고		
주택의	규모 및	계	347			100.0				
규모별 :	건설비율	60 m²이하	153	153		44.1	소형주	택 : 22세대(6.3%)		
		$60 \sim 85  m^2$	하 154	154		44.4				
		85 m² 초과	40							
건축물의	건축선에		22.2.2.0							
		• 노도먼 건숙안계선 3m								
		● 고고부해토리 · 포워 6m								
관한	계획	▼ 중국생중도 · 축전 OIII								
		• 규모별 주택	<u>별</u> 주택건설비율							
		전용면적(m²)	) 세대수		1	비율(%)		비고		
주택의	규모 및	계	316			100.0				
규모별 :	건설비율	60 m²이하	89			28.2	국	민주택규모주택 :		
		$60 \sim 85  m^2  \text{old}$	하 163			51.6		15세대(4.7%)		
		85 m²	64			20.2				
건축물의	건축선에									
		• 도로변 건축	·한계선 3m							
		- 고고니센트	7 . 포이 0							
		• 공공모앵동	도 · 푹천 bm							
	명칭 획지1 획지1 <sup>직무</sup> 막의 기타/ 건축물의 구막별 기타/ 건축물의 기타/	획지1 14,349.5	명칭 (m²)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망배동 891-3번지 일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(m² 제 60m²이하 60~85m²초과 전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우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연예 (m² 전용면적(m² 전용면전(m² (m² 전A) (m²	명칭 (m²)	명칭 면적 (m²)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사대복리시설 30%에 일대 사대복리시설 등 전용면적(m²) 세대수 계 347 60m²이하 153 60~85m²으과 40 전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• 구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(m²) 세대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• 구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(m²) 세대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• 구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(m²) 세대수 계 316 60~85m²이하 163 85m²초과 6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•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16 60~85m²이하 163 85m²초과 6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• 고고보해토리 : 포워 6m	명칭 면적 (m²)	명칭 면적 (m²) 위치 주용도 선계율 (%) 정비 계획 명치 14,349.5 왕배동 891-3번지 일대 부대복리시설 30%이하 일대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부대복리시설 30%이하 일대 사람보리시설 이하 의하 의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관 기관 기타사항에 관관 기관	명칭 면적 (m')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보내동 28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%이하 221.5% 이하 이하 의하 일대 방배동 891-3번지 일대 부대복리시설 30%이하 221.19% 이하 이하 의하 의제 347 100.0 1하 153 44.1 소형주 60~85m'이하 154 44.4 85m'초과 40 11.5 전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획지 면적 변경으로 인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

## 다) 개발가능(상한)용적률 산정(변경)

## ■ 기정

구 분			산 정 내	용		비고					
토지이용계획	계(구역면적)	대지면적	신설 정비기반시설	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	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	-					
	17,596.0 m²	$14,349.5m^2$	$3,210.5 m^2$	$197.2\mathrm{m}^2$	1,183.4 m²						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	순부담면적 :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= 3,210.5 - 197.2㎡ - 1,183.4㎡ = 1,829.9㎡ (택지면적대비 12.75%)									
개발가 <b>능</b> 용적률 산정	<ul> <li>개발가능용</li> <li>= 190%</li> <li>* a = 공- a = 1,</li> <li>※ 「도시 및 재산의</li> </ul>	<ul> <li>허용용적률 = 계획(기준)용적률 + β = 190% + 0 = 190%</li> <li>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a)         = 190% × {1 + (1.3 × 0.127524)} = 221.5%</li> <li>*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α = 1,829.9m² / 14,349.5m² = 0.127524</li> <li>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・공유 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으로 산정한 것임.</li> <li>• 정비계획 용적률 = 221.5% 이하</li> </ul>									
재건축소형 주택산정	<ul> <li>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연면적 = 용적률 증가분의 50% × 택지(획지)면적 = {(239.45% - 221.5%) × 50%} × 14,349.5 m² = 1,287.9 m² 이상</li> <li>▶용적률 증가분 = 예정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</li> <li>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: 1,301.6 m² (지상층 연면적)</li> <li>▶세대수 22세대(전용면적 45 m²형 22세대)</li> <li>22세대 × 60.18 m² (공급면적) ≒ 1,324.0 m²</li> <li>기준 1,287.9 m² (용적률 8.975%) 〈 계획 1,324.0 m² (용적률 9.23%)</li> </ul>										

#### ■ 변경

구 분			산 정 내	영			비고				
토지이용계획	계(구역면적)	대지면적	신설 정비기반시설	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	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년 국공유지	H					
도시이공계획	17,549.8 m²	14,356.1 m²	$3,193.7 m^2$	$197.2$ $m^2$	1,183.41	$m^{z}$					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	순부담면적: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= 3,193.7㎡ - 197.2㎡ - 1,183.4㎡ = 1,813.1㎡ (택지면적대비 12.62%)									
개발가능 용적률 산정	<ul> <li>개발가능용</li> <li>= 190%</li> <li>* a = スー a = 1,</li> <li>※ 「도시 및 재산의</li> </ul>	<ul> <li>허용용적률 = 계획(기준)용적률 + β = 190% + 0 = 190%</li> <li>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a)</li> <li>= 190% × {1 + (1.3 × 0.126294)} = 221.19%</li> <li>*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α = 1,813.1 m² / 14,356.1 m² = 0.126294</li> <li>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·공유 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으로 산정한 것임.</li> <li>정비계획 용적률 = 221.19% 이하</li> </ul>									
국민주택규모 주택 산정	<ul> <li>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연면적 = 용적률 증가분의 50% × 택지(획지)면적 = {(239.45% - 221.19%) × 50%} × 14,356.1 m² = 1,317.9 m² 이상 ▶ 용적률 증가분 = 예정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</li> <li>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: 1,350.7785 m² (지상층 연면적)</li> <li>▶세대수 15세대</li> <li>용세대 × 80.4207 m² + 5세대 × 96.4839 m² + 2세대 × 112.4967 m² ≒ 1,350.7785 m²</li> <li>기준 1,310.7 m² (용적률 9.13%) 〈 계획 1,350.7 m² (용적률 9.41%)</li> </ul>										

- ※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 및 제97조(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)에 따라 정비기반시 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
- ※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이용계획별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후 사업시행인가를 하여야 함

## 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

기사이 주린		면 적(m²)		비고	
시설의 종류	기 정	변 경	변경후	D  1½	
작은도서관	110.00	_	110.00	데크층	
보육시설	300.00	_	300.00	데크층	
경로당	160.00	_	160.00	데크층	
어린이놀이터	500.00	_	500.00	외부	
주민운동시설	100.00	_	100.00	외부	
관리사무소	109.70	감)4.6	105.10	MDF실 포함, 지상층	
주민공동시설	268.80	감)18.4	250.40	데크층	
경비실	65.09	_	65.09	지상층	

※ 변경 사유 : 획지 면적 변경으로 인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

## 6)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)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자	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결과	비고
기정	주택재건축 정비사업	정비구역 지정(변경)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	방배7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	<ul><li>현황: 234</li><li>계획: 347</li><li>증가세대수: 113</li><li>(소형주택22세대포함)</li></ul>	해당사항 없음	서고시 제2021-109호 (2021.6.17.)
변경	주택재건축 정비사업	정비구역 지정(변경)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	방배7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	• 현황: 234 • 계획: 316 • 증가세대수: 82 (국민주택규모주택 15세대포함)	해당사항 없음	-

※ 변경 사유 :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세대수 변경

## 7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	토지이용	•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	
	- 도시이공 -	• 녹지공간 최대 확보	
		•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	
	대기질	•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으로 어우러진	
		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	
싱거버지	수질	•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	
환경보전		•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 후 위탁처리	
	폐기물	• 지구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	
		• 서울시 페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	
		• 진출입로 차량운행 시 경적사용 금지	
	소음·진동	•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	
		•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	
	• 피난 및	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	
	• 내구성	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	
ગો, ໄચી ગ	• 녹지대	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	
재난방지	확대함.	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	
	<ul><li>수해방</li></ul>	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재난에 대비	
	• 수해 위	험도가 큰 지역 수전실(변압시설 및 비상발전기실 등) 지상 또는 지하1층에 배치	

## 8)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)

## 가)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산정(변경)

	구 분	산정식	산정	비고
	대지면적	A	$14,349.5 extit{m}^{\circ}$	공공시설(공원,도로 등) 제외 면적
	예정법적상한용적률	В	239.45%	용적률산정 연면적 34,359.87 m²
기정	정비계획용적률	С	221.5%	계획연면적 31,782.70 m²
	초과용적률의 50%(D)	(B-C)×50%	(239.45-221.5) x 50% =8.975%	도정법30조의3 제3항
	재건축소형주택 의무건설면적	A×D	14,349.5 m² x 8.975% = 1,287.9 m²이상	초과용적률의 50% 이상 (1,324.0㎡: 9.23% 확보)
	대지면적	A	$14,356.1 extit{m}^2$	공공시설(공원,도로 등) 제외 면적
	예정법적상한용적률	В	239.45%	용적률산정 연면적 34,349.92 <i>㎡</i>
변경	정비계획용적률	С	221.19%	계획연면적 34,809.92 <i>㎡</i>
	초과용적률의 50%(D)	(B-C)×50%	(239.45-221.19) x 50% =9.13%	도정법30조의3 제3항
	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건설면적	A×D	14,356.1 m² x 9.13% = 1,310.7 m²이상	초과용적률의 50% 이상 (1,350.7㎡: 9.41% 확보)

## 나)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정비계획 용적률	예정법적 상한용적률	공급비율	법정공급 연면적	실제 공급비율	실제공급 연면적	국민주택규모 주택 세대수	비고
기정	221.5%	239.45%	8.975%	1,287.9 m²	9.23%	1,324.0 m²	22세대	
변경	221.19%	239.45%	9.13%	1,310.7 m <sup>2</sup>	9.41%	1,350.7 m²	15세대	

## 9) 환경성 검토(변경없음)

겉	<b>보</b> 하목	검토 결과	환경영향	대책 및 반영사항	비고
	토양포장 우수유출	0	• 토양포장,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	•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반영,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	_
자 연	지형변동 절성토균형	0	•기 주택로서 대규모 지형변동 없음	• 주변단지와 도로의 Level에 맞게 계획	_
환 경	녹지변동 녹지체계	0	• 녹지축에 변동 없음	• 단지내 녹지공간조성, 오픈스페이스 확보	_
	습지보전	×	• 보전대상 습지 없음		-
	비오톱	0	• 토지이용의 변화로 비오톱 유형변화	• 녹지공간 조성, 불투수 토양포장비율 완화	_
	일조	0	• 일조침해 거의 없음	• 건축물 높이제한, 통풍이 가능한 건축 배치, Sky Line 등 고려(일조에 의한 사선제한)	_
	바람	0	•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국지적 풍향 및 통풍 변동예상	•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	-
생활환경	경관 및 휴식공간	0	• Sky line 변화 거의 없음 공개공지 및 시민 쉼터 확보 여부	<ul> <li>Sky Line을 고려한 층고 계획, 차폐 및 경관녹지 조성</li> <li>오픈스페이스 확보, 거주지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쉼터 확보</li> </ul>	_
73	에너지	0	•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증가 예상	・청정연료(LNG)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	_
	환경오염	0	•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,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 및 폐기물의 증가	• 청정연료 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 없음	_
	물순환	0	• 우수유출량의 변화 예상	•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	_
व	계획시행중   상되는  -경영향	0	•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, 비산먼지, 토사유출 등 발생 예상	• 장비분산투입, 작업장내 차속제한, 토공 작업 및 나지의 주기적 살수,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	_

주) 검토결과 : X 해당사항 없음, ○ 환경영향 예상됨

## 2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##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)

7 11	정비사업	위 치		면 적(m²)		ul a
구분	명 칭	위 치 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고
변 경	방배 7주택 재건축정비사업	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1-3번지 일원	17,560.0	감)10.2	17,549.8	_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## 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

1)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: 변경

가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)

구 분		면 적(m²)	구성비(%)	비고		
T 世	기 정	변 경	변경후	784(%)	미끄	
합계	17,560.0	감)10.2	17,549.8	100.0		
제2종일반주거지역	17,560.0	감)10.2	17,549.8	100.0		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## 2)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: 변경

가) 도로(변경없음)

		규	모			연장	위	치	사용	최초	
구분	이 나 나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 점	종 점	형태	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	1	1	10	일반 도로	105	방배동 891-14	방배동 892-23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
기정	소로	2	1	8	일반 도로	195	방배동 891-14	방배동 894-1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
기정	중로	3	1	12	일반 도로	95	방배동 891-24	방배동 141-32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
기정	중로	3	2	12	일반 도로	210	방배동 892-23	방배동 141-40	국지 도로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

#### 나) 공원(변경)

도면 구분 표시		시	설의 종류	위 치		면 적(m²)		최초결정일	비고	
7 €	표기 번호	명칭	시설의 세분	71 /1	기 정	변 경	변경후	러오건(8 년	미끄	
변경	-	공원	소공원	방배동 891-21번지 일대	986.8	감)5.3	981.5	서고시 제2012-193호 (2012.7.26.)	-	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 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
## 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구분	획지번호	면적(m²)	비고
기정	1	14,349.5	-
변경	1	14,356.1	-
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(2022.01.25.)반영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(선형 변경없음)

#### 2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#### 가) 건축물의 용도계획(변경없음)

#### ■ 건축물의 허용용도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획지번호	전 층	비고
허용용도	1	•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결정도 참조

#### ■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(변경없음)

구흥	후 획지번호	전 층	비고
불허용	-도 l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결정도 참조

### 나) 건축물의 밀도계획(변경)

#### ■ 건축물의 건폐율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획지번호	건폐율	비고
건폐율	1	• 30% 이하	결정도 참조

## ■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(변경)

구	분	획지번호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정비계획용적률	법적상한용적률	비고
용적률	기정	1	1000/	190%	221.50%	020 450/	결정도 참조
공격포	변경	1	190%	190%	221.19%	239.45%	결정도 참조

※ 변경 사유 :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

## ■ 건축물의 높이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획지번호	최고높이	비고
높이	1	• 65m 이하(지상 19층) • 평균층수 15층 이하	결정도 참조

## 다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계획

구 분	계획내용	비고
배치	<ul> <li>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층고계획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방감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유도하여 층수 조절 및 배치계획 수립</li> <li>기존의 지형, 조망경관, 도로의 위치, 고저차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배치계획</li> </ul>	
형태	<ul> <li>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하되,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</li> <li>옥상시설물(물탱크, 기계실 등)의 노출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벽은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</li> </ul>	
색채	<ul> <li>일체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'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보고서'에 준하여 색채계획 수립</li> <li>주변 건축물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색상, 명도, 채도를설정하여 색체계획 수립</li> <li>경관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상지 주변건축물과 전체적으로 통일감 및 자연스러운 흐름을 연출 될 수있도록 색체계획</li> </ul>	
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구역경계로부터 3m	

## 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## 가)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공공보행통로	• 폭원 6m 계획	결정도 참조

## 나)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진출입구	• 대상지 북측(서로대로32길)에 차량진출입구 계획	결정도 참조

## 다)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계획 내용	비고
옥상녹화	• "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(2007.2.7.)"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	
벽면녹화	• "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"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	
생태면적률	• "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" 준수	
옥외광고물	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"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", "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(서울시고시 제2017-490호)" 기준 및 "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(2008.3)"을 준수	
빗물이용시설	• "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", "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"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	
신·재생에너 지 시설	• "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" 및 "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66호)"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	
야간경관 조명	•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	

3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〈붙임1〉정비계획 관련도면

1)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/변경)

## 〈붙임2〉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

- 1)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/변경)
- 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## 4. 관련서류

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**2**2155-7342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붙임1〉 □ 정비계획결정도(기정)



## □ 정비계획결정도(변경)



〈붙임2〉 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)



## 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변경)

